

#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 K-ETA 운영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에 대한 전자여행허가(K-ETA) 운영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1. 적용 대상

- (국가) K-ETA 신청이 잠정 정지된 63개 국가(별첨 1) 국민 중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필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히리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 상기국가는 초청기업 또는 해당외국인이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K-ETA)에서 직접 K-ETA 신청

- (대상자)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비자발급 대상자

\* (C-3 대상)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 지도 등 영리목적 등을 위한 단기취업(C-4) 대상자는 K-ETA 신청 불가

## 2. 신청 안내

- ① (신청대상) 적용대상 해외기업인을 초청하는 부산지역 중소기업(본사기준)  
- 기타지역 중소기업은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문의
- ② (신청기간) 최소 입국 10일전 신청 (토, 일, 공휴일 불포함)
- ③ (신청방법) 준비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 (신청제목: KETA 신청\_업체명\_신청일자)

- ④ (준비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② 신청 엑셀 양식, ③초청외국인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④ 초청장 또는 항공권 ⑤방문목적 증빙서류(계약서 등)  
⑤ (접수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최진희 주무관(T.051-601-5165/  
amirah2@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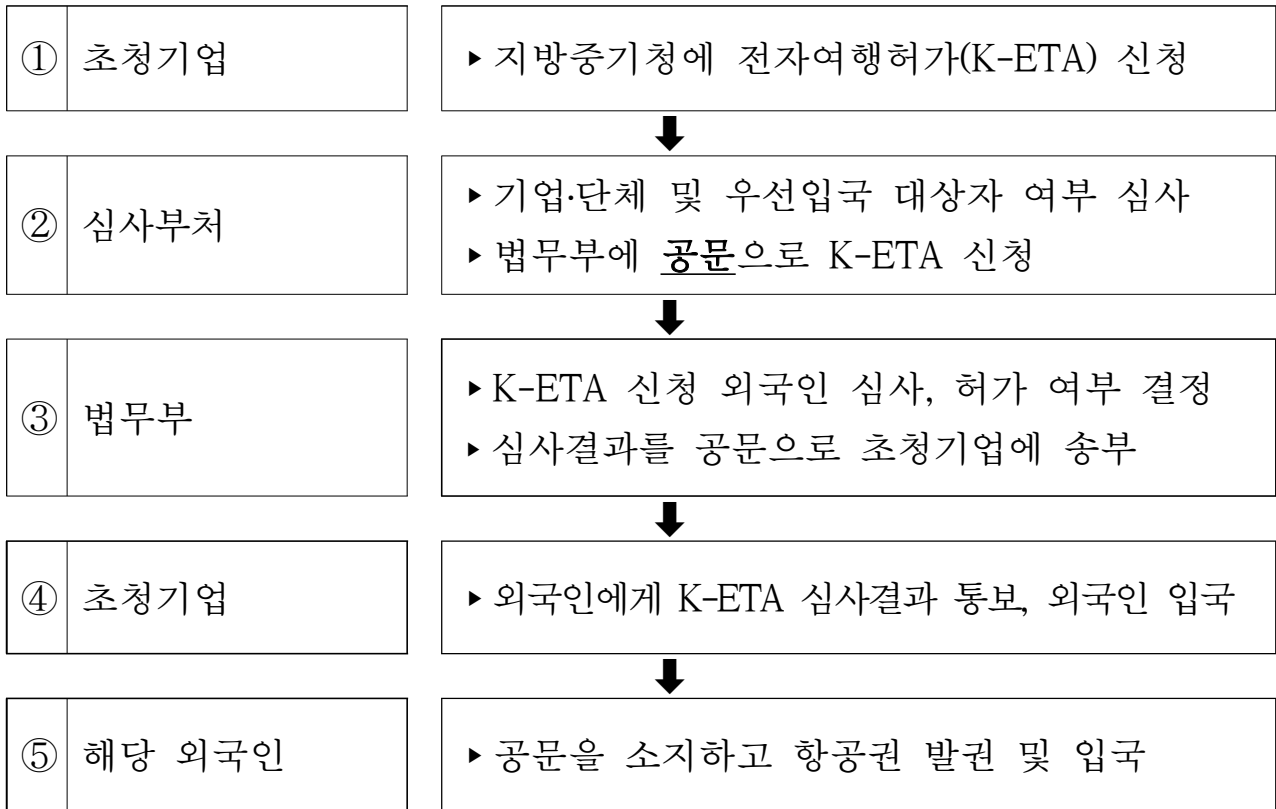
**※ 기업인 격리면제는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에 별도 신청  
법무부 최종심사에서 K-ETA 발급이 불승인 될 수 있음**

**별첨 1** 중기부에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63개국)

□K-ETA 신청이 잠정 정지된 국가

총 63개국	
아시아 (17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랍 에미리트, 오만, 이스라엘, 일본, 카자흐스탄, 카타르, 쿠웨이트, 타이완, 태국, 터키, 홍콩
미주 (23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캐나다, 아르 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유럽 (4개국)	러시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오세아니아 (11개국)	나우르, 뉴질랜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 리바시,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아프리카 (8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이셸, 에스와 티니, 튀니지

### 1. 신청 및 허가 절차



### 2. 심사부처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중기부(그외 중소기업)